

〈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과제(아이디어) 제안서〉

규제 혁신 제안 과제	연구소기업의 한시적 특구 내 연구기관 입주 허용
분 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산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술창업/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업성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관리/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기술사업화 인프라
관련 규정·제도/법령	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소관 기관	과학기술정보통신부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)
규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.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○ 제9조의4(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소기업 부지 설립 및 이전 시 대부분 연구소기업이 임대지를 찾기가 어려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기관 내 임대공간 만실 및 만료* 등의 사유로 사업장 설립 및 당초 사업장 퇴거 시 신규 혹은 대체 임대지를 찾고자 할 때, <u>임대료 부담, 상승 혹은 임대사무실 부족 현상 만연</u> *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의 경우 입주 후 5년 이상인 경우 퇴거 ○ 설립 주체 기관 내 입주하더라도 기관의 일부분이 특구가 아닌 경우가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른 특구 내 임대지를 찾아 설립 시 거리적, 시간적 한계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소기업이 <u>연구성과에 대한 상호교환이 촉진 애로사항 발생</u> * 경북대학교 IT융합빌딩 및 테크노빌딩/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외 등
규제개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입주기간 만료 시 한시적(6개월~1년)기간 동안 특구 내 연구기관 입주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주 미선정 공문 또는 입주 후 기간 만료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입주허용 시설에 한시적으로 입주하여 추후 공공연구기관과의 상호교환 및 최적의 임대공간을 찾을 수 있는 허용을 통해 연구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※ 법령·규정 개정안 포함(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)

규제 허용 구분	현행	개정(안)
취소 유예 시	<p>제9조의4(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생략 4.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	<p>제9조의4(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. <u>또한, 제 4항의 경우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입주할 경우 1년의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생략 4.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등록 요건 완화 시	<p>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 ① ~ ②. 생략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생략 3. 특구 안에 설립할 것 	<p>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 ① ~ ②. 생략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u>다만 3호의 경우 한시적(1년 이내)으로 특구 내 공공기관에 입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~ 2. 생략 3. 특구 안에 설립할 것

기대효과

-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기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
-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기술 사업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규제의 허용을 통해 **사업성과 창출 및 만족도 제고** → **연구집중 ↑(상승) 취소율 ↓(감소)**
- 임대지를 갖추지 못한 채 허위 등록을 하는 연구소기업의 비율 감소 및 연구기관 내 설립으로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**관리 감독 강화**

비고

- 연구소기업 실태조사 및 특구 내 입주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**애로사항 청취 중 다수 의견으로 규제 허용에 대한 필요성 제시**
-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여 등록 취소하거나, 본사와 지사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다수 민원제기를 바탕으로 본 제안을 공모함